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, 귀속시설 여부 및 시기,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·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, 임대차 계약 체결·변경 시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(안 제90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